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1. 8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내무 12200 - 1479('95. 8. 12)호 '95행정조직진단 실시계획 및
- 지방 12200 - 1292('95. 8. 17)호 지방행정조직관리 발전방향제시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직진단 실시

2. 제정근거

- 내무 12200 - 2199('95. 11. 28)호로 화순군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정원
상계조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 지방 12200 - 1925('95. 12. 20)호로
 - . 직렬조정(북면장 행정 + 농업 5급 ⇒ 행정 + 농업 + 임업 5급,
동면장 행정 + 농업 5급 ⇒ 행정 + 농업 + 토목 5급)은 승인되었으며,
 - . 화순읍 과.계 기구증설 및 정원 상계조정은 내무부 방침이 불허하였음.

3. 주요골자

- 기구의 폐지 및 설치에 대하여
 - .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 . 경영정책실 및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였으며,
 - .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였음.
- 실과별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는
 - . 경영정책실에 군정시책개발 분석에 중점을 두었고,
 - . 도시과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 . 사회진흥과 사업적성격 사무는 도시과로, 시책사무는 내무과로, 유사증복
업무등을 통.폐합하였음.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화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정책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경영정책실) 경영정책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업무 종합기획 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광역 행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공약사항 처리분석에 관한 사항
6. 군 경영 수익 기획에 관한 사항

제4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의 기획,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운영지원
3. 예산편성, 집행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4.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체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투자의 심사,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조례, 규칙의 심사등 자치법규 관리, 쟁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공보계획에 관한 사항
2. 언론 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에 관한 사항

3. 국, 도, 군정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7. 출판, 향교, 사찰에 관한 사항
8. 예술문화 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9. 관광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민원사무 청구 즉결처리에 관한 사항
3. 민원1회방문 처리 종합에 관한 사항
4. 인장업, 행정서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및 보안,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2. 문서 수발 통제 및 보존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교양 및 복리에 관한 사항
6.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시책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9.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0.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1. 그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8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군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구입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6. 군 금고 및 공채, 국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8.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및 취득업무에 관한 사항

2.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분할 허가 업무 및 이동지 검사 정리에 관한 사항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6.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지가의 결정, 공개 및 열람,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항

제1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구호, 후생, 원호 업무에 관한 사항

2. 군민 복지시책 및 사회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

3. 이재민 대책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6.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7. 노인, 부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8.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사항

9.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7. 위생환경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5. 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6. 영농 기계화 추진 및 농업 경영 합리화
7.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사항
8.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9.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 장려에 관한 사항
10. 가축의 증식 및 도축장, 가축시장에 관한 사항
11. 수자원 보호 및 수산물 증식등 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림 및 수종 개신에 관한 사항
3. 양묘사업 및 묘목의 수급 관리. 검사에 관한 사항
4. 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산림 재해에 관한 사항
6. 임산물 수급조절 및 부정 임산물에 관한 사항
7. 야생 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에 관한 사항
8. 전 국토 공원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4.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6. 노정업무 및 광공업 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

7.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8.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1.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12.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및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2. 도선장 및 토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에 관한 사항

4. 하천 및 도로 공작물에 관한 사항

5.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

7. 개간허가에 관한 사항

8. 토지 및 농지개량조사 측량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9.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10. 도로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11. 가로지장물에 관한 사항

12.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2.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이용 및 용지매수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4. 건축업무에 관한 사항
5.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6.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7. 새마을 소득사업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공원녹지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택개량등 주거환경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3.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1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및 민방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소방시설의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동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교육, 훈련 및 계몽에 관한 사항
5.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6. 병무행정 및 공익근무에 관한 사항
7.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제18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